

과세이연계좌신고서

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즉시
① 퇴직자 인적사항	성명	주민등록번호
	주소	

② 과세이연계좌 신고사항

(1) 과세이연계좌

과세이연계좌 취급기관명		사업자등록번호	
계좌번호 (예금주)			

(2) 입금내역

일 자		금 액	
① 퇴 사 일		④ 세 후 퇴직급여액	
② 과세이연계좌 입금일		⑤ 입 금 액	
③ 퇴직금 수령일로부터 경과일수		⑥ 입금비율 (⑤ ÷ ④ × 100)	

상기 본인은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202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퇴직급여액 과세이연 계좌를 신고 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첨부서류	뒤쪽 참조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	--------

첨부서류	1. 과세이연계좌 통장사본 또는 입금증 1부 2.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 3. 금융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퇴직한 회사의 퇴직소득세 환급 담당자 연락처 등을 기재한 서류	수수료 없 음
------	--	------------

작 성 방 법

1. 이 서식은 퇴직자가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로 이체(입금)함으로써 이미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으려는 경우에 사용됩니다.
2. ②과세이연계좌 (이체)입금일란은 퇴직금을 수령한 날부터 60일을 경과하여서는 안 됩니다.

처 리 절 차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신 고 인	경 유 기 관	처 리 기 관
		원천징수 의무자
과세이연계좌 신고서 작성 및 제출	금융회사	접 수 (원천징수의무자)
		과세이연 요건 확인 (원천징수의무자)
		과세이연한 퇴직소득세액 조정환급(환급) (원천징수의무자)